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

신청인	법인 또는 기관명	
	대표자(성명)	생년월일(성별)
	주소	전화번호

점용·사용허가 번호(협의·승인 연월일)	
장소	
목적	
총사업비	천원
준공내용	점용·사용시설 면적 m ²
	공유수면 점용·사용면적 m ²
공사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	
----------------------	--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을 합니다.

년 월 일

(공유수면관리청)

직인

※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·주소·생년월일(성별)을 적어야 합니다.

※ 이 별지에서 "공유수면관리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